

제410회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30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7)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5)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4)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3)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3)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5)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6)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21.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2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23.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24.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25.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26.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27.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28.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29.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31.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32.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4.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5)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3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상정된 안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 3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 3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7) …… 3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5) …… 3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4) …… 3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3) …… 3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 3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3) …… 3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 3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 …… 3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 …… 3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5) …… 3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6) …… 3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20.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 3
21.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 3
2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 3
23.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 3
24.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 3
25.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 3
26.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 3
27.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 3
28.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 3
29.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 3
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 3
31.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 3
32.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 3
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
34.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 3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 3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5) …… 4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	4
3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4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5)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5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81)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7)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5)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4)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83)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49)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03)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9)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
1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5)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16)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6)
21.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5)
22.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43)
23.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4)
24.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
25.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
26.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7)
27.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2)
28.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5)
29.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6)
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56)
31.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62)
32.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15)
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15)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5)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39.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786)

○위원장 김민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총 39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2일과 29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중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업무는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전문기관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청산인이 청산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 천준호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

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2026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수립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업도시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배현진 의원, 유경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13건의 법률안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으로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한 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로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안하도록 하고,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특례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1일 1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4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취미·여가 등을 위한 드론공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은 하되 재정적 지원은 제외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강대식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를 대체차하는 경우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하여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수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것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토론보다는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양당 간사님과, 법안심사 관련해서 요청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제가 22년 9월 22일에 대표발의를 했던 또 법안소위에 회부된 것은 23년 2월 15일인데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여섯 차례가 열렸던 국토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해서 과밀억제 권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해 가지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2월 15일에 이 법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될 때 제가 직접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수도권 내에서도, 3기 신도시 지역인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규제와 수도권 과밀억제에 대한 지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공공주택 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즉 주거시설만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첨단산업시설이나 공업시설 같은 것들을 전혀 늘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렇게 중첩규제가 돼 있어 가지고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본 법안에 대해서 경기도 측에서도 적극 찬성의견을 보내 왔고 또 저희가 올해 초에는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등 도내 개발 사업들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족활성화 TF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십여 분 정도의 의원님들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을 때도 기초발제했던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께서도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규제들을 다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올려서 심의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양당 간사님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이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최인호 간사님하고 김정재 간사님은 국토위 위원이신 한준호 위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신 법안에 대해서 다음번에 꼭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홍 위원님, 토론이지요?

○김수홍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토론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오늘 정부에서 장관님이 안 나오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홍 위원 차관님, 통계청이 3/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오던데 3/4분기가 0.70입니다. 작년의 0.80에서 1년 사이에 0.10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최고 큰 현안이 저출산하고 지방소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지방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저출산이나 지방소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압니다.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김수홍 위원 이게 전부 수도권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고비용·고위험 사회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출산을 하려고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니까 그 젊은이들도 출산을 거부하고 해서 양쪽에서 수도권에서도 거부하고 지방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저출산이 계속 침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왜 지방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 때문이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방의 중소도시 구도심을 바라보면 이게 소굴 같아요. 정상적인 도시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통과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도축법이 돼서 하게 되면 지방의 젊은이들이나 장년층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와야지요.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 지방의 중소도시나 지방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요.

만약에 그런 대책 없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정부가 수용하고, 일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문제는 방치하는 상태로 정부가 법안 심사나 정책결정에 임하게 되면 우리 미래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노후계획도시법하고 재정비촉진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지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님 매번 회의 때 강조하시다시피 국토 전체 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토부에서도 그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큰 주제로 생각을 하고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소멸,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도정법이라든지 개별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일단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노후계획 특별법은 일단 대규모 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소위에서 결정을 해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김수홍 위원 아니, 위원님들은 결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축법 개정해서 개발 제한을 좀 완화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민간기업이나 LH가 투자는 가능한데 지방 중소도시는 투자를 안 합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계속 더욱 가속화를 시키면 갈수록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가 수도권

에 집중을 초래하는 주택정책이나 SOC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있는 차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집착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젠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안 통과되기에 앞서서 차관님께서 지방의 중소도시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수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잠시만요. 지금 토론이지요?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오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완화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기준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지난 15년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의 거의 2배 가까운 완화안이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격차 해소, 불균형발전 해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들이 바닥은 계속 더 떨어지고 천장만 계속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지역 불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소멸이라든지 격차 확대라든지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정치가 누적적으로 만들어낸 정책의 결과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한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전제하더라도 제가 차관님께 꼭 묻고 싶은 것은 제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15년 됐는데, 제가 아는 한 국회에서 만든 법 중에 가장 비운의 제도가 바로 이 재조환법입니다. 만들어져서 15년 동안 두 번 유예됐고 그다음에 유예가 풀렸는데도 18년 이후에는 아예 걷지도 않았고, 그래서 15년 동안 딱 5개 단지 25억만 부과했어요. 이번에도 15년이 지난 기준이기 때

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필요 이외에도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건으려면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 재조환 관련된 소위 회의만 해도, 제가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저 오기 전부터 해서 네 차례 정도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죽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조환 법률 다룰 때 소위에 두 차례 참석해서 정부의 의견도 말씀드리고 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변함없이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현행 법률이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집값 상승이나 이런 여건 변화들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부과 기준이나 구간 등을 합리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위원님들께서 다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소위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담아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오류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가상승률 2배가 넘는 재조환 기준 완화를 한다는 점을 위원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15년 동안 계속 유예되고 집행 해태하고 그다음에 완화하고 이런 과정만 되풀이됐는데 여기에 국회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김수홍 위원님께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소멸에 대한 정말 심각한 우려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노후신도시법 그다음에 도시재정비법, 여러 가지 대당 차원에서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사실상 지난 10년간 지역에서 서울·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 인구가 무려 60만 명이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10년간 4만 7000명의 청년이 서울·수도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4만 7000명이면 강원도는 2개 군 단위 지자체가 지역소멸되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수도권의 도심을 재개발하고 또 서울·수도권 도심으로의 집중효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통과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들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소멸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짓는 공공주택은 향후 30년의 내구연한이 아니라 100년 갈 수 있는 정말 튼튼한 장수명 주택으로서의 공공주택을 정책적으로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짓는 주택에 대해서 불신과 부실과, 검단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부 정책도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이 4대 특구정책을 통해서 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상당히 더딤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와 관련된 도심융합특구 사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나 또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것들과 잘 융합해 가지고 조속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아까 김수홍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랑 거의 동일한 취지이신 것 같아서 저희 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대책 곧 발표하세요. 곧 발표하시라고, 대통령께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빨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역은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그러면 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마지막 김학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들이 애를 쓰셔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법안을 다루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수도권과 지방 이런 이분법하에서 어쩌면 이름도 모르게 피해를 보는 그런 우리 안성 같은 지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지방을 발전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건 또 수도권이라고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5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실질적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마는 수도권 중에서도 실제 수도권의 혜택은 못 보고 인구가 정체되거나 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지방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 줘야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모든 게 다 되는데 행정구역이 수도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법에도 혜택을 못 받고 저 법에도 혜택을 못 받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국토교통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자기 고향이 안성이다, 자기 고향이 가평이다, 연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 그냥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냥 그대로 주구장창 뭉개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교통부에서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려고요.

노파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침 1차관계서 그 당시에 참여를 했으니까 차질이 없으리라고 믿습시다마는 창원과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난 계획

도시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빼놓을 뻔했는데 강기운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발언을 해서, 복잡하게 만드느니 12월에 시행령 할 때 이걸 넣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안산과 창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차관께서 안성이 처갓집이라고 생각하든지 외할머니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고향이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제 고향이 소멸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또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향에 조금 더 활력이나 일자리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생겨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특히 젊은 층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서 정주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학용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수도권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혜택은 못 보고 피해는 보는 안성이나 여주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이나 안성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용 위원 아니, 비슷하지가 않다니까. 완전히 틀리다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어찌 보면 지방 저기 경북 어디, 시골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학용 위원 서러워서라도 직접 장관으로 가서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알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2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5항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4선 의원님이 답변을 계속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9항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3건의 제정법률안 중 제20항의 법률안은 2020년 9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다른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3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3항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및 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7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진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중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총 3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김병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저도 현안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잠깐만요. 지금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다음에 맹성규 위원님은 간단한 현안질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위원님부터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과 국토부 관계자들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다수의 계획도시 주민들이 기다려 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늘 국토위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법사위와 특히 본회의에 통과가 잘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화된 주거공간의 재건축은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만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낡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건축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공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조성하여 미래 도시인 스마트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법인데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과

국토부 관계자들께서 잘 협심하셔서 이 법을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현안질의지요?

○맹성규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 차관님, 저희가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6개월 후에는 그것을 다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도록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맹성규 위원 그런데 다음 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예방을 위해 관련되는 법안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음 주 법 개정에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려움과 아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리고 검단아파트 관련입니다. 13블록은 국토부가 공공주택추진단에 주선을 잘해 주셔서 LH하고 GS하고 협의를 잘 마쳤어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외벽에 철근이 빠진 21블록은 전혀 담보 상태거든요. 이 역시 국토부가 좀 주선을 해서 사장님하고 차관님하고 주민대표단하고 대표단,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물꼬를 터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블록? 국토부가 나서면 좀 더 해결이 되는데, 계속 LH하고 주민들하고만 놔두니까 지금 이게 담보 상태로밖에, 진전이 전혀 없어요. 어디까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일단 LH가 주도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님도 한번도 만난 적도 없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LH가. 그러니까

사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LH 사장님이 주민들과 만나서 물꼬를 트기로 했는데 전혀 그게 없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그 부분은 다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인천지역본부에 있는 분들만 가서 하니까 이게 계속 답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고 받으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다음 주 법안소위 할 때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계기는 국토부에서 중심을 잡고 LH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든지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예.

○맹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홍 위원 저도 짧게 현안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민기 김수홍 위원님, 짧게 현안질의 하십시오.

○김수홍 위원 차관님,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국민들한테 안전한 주거 실현하는 것이고 또 국토의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방의 중소도시가 소멸에 직면해서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차관께서도 좀 처참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고 예결위에서도 소소위에서 증액심사가 아마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 예산의 경우 마지막 쟁점이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인 것 같아요.

저는 균형발전은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실현이 돼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새만금 예산의 복원이고 국토부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재부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적극적으로

로 협력해서……

백원국 차관님, 새만금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하시고 또 마지막의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새만금공항과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은 담았다고 보는데요.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수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한다고 하신 것 유효한 거지요?

○최인호 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최인호 위원님 현안질의 3분만.

○최인호 위원 차관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에 있어서 최소 면적을 완화한다든지 또 사업 유형도 다양하게 추가를 했고 공공사업자 참여 가능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기반시설에서 국비 지원 가능,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구도심이나 원도심에도 상당히 재정비의 활성을 기해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의 중요성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바인데 문제는 정부가 이 법 개정에 따른 실행 의지를 좀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통과되기 전에 올 초 원한 곳에 지구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르는, 물론 이게 노후계획도시와는 좀 다른, 범위도 넓고 대상지도 워낙 많고 또 복잡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러나 지역이나 수도권의 원도심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들이 더 점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 구체화 의지나 실행 계획들을 한번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잘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오진 위원님, 재촉법 관

런해서도 소위에서 그게 그냥 쉽게 정리된 부분은 아니고 정부 측하고 같이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 법이 우리 국토심 원도심에 활력을 제공하는 그런 근간이 되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 부에서도 시행령이든 아니면 규칙이든, 그 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주민 그다음에 또 유관 정부기관들하고 잘 숙의해 가면서 주민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상임위 때는 도축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실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태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차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강 대 식	권 영 세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수 홍
김 정 재	김 학 용	맹 성 규	민 홍 철
서 범 수	서 일 준	심 상 정	엄 태 영
유 경 준	이 소 영	장 철 민	정 동 만
조 오 섭	최 인 호	한 준 호	허 영
허 중 식	홍 기 원		

○청가 위원(1인)

박 상 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재 유
전 문 위 원	장 지 원

입 법 심 의 관 이 현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 1 차 관	김 오 진
제 2 차 관	백 원 국
기획조정실장	문 성 요
국토도시실장	최 임 락
주택토지실장	진 현 환
교통물류실장	이 윤 상
항공정책실장	정 용 식
건설정책국장	김 상 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강 희 업

【보고사항】

○의안 회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권영세 · 이인선 · 강대식 · 주호영 · 서일준 · 최영희 · 윤두현 · 강기윤 · 하영제 · 이용 의원 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정청래 · 정일영 · 이수진(비) · 이원택 · 임오경 · 신영대 · 이병훈 · 유정주 · 김병기 · 강선우 의원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민병덕 · 이동주 · 윤후덕 · 남인순 · 김병기 · 양경숙 · 오영환 · 안규백 · 김영호 · 최중윤 · 황운하 · 이용빈 의원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강대식 · 김용관 · 권영세 · 박대수 · 최연숙 · 유경준 · 성일종 · 송석준 · 金炳旭 · 주호영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권영세 · 김용관 · 이인선 · 하영제 · 김정재 · 이양수 · 주호영 · 김형동 · 태영호 · 강기윤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4. 강대식 · 김용관 · 권영세 · 박대수 · 최연숙 · 유경준 · 이종배 · 성일종 · 송석준 · 金炳旭 · 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5일 회부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김한규·박용진·이용빈·백혜련·민병덕·서영석·김종민·송재호·홍성국·강민정·문정복 의원 발의)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이인영·조오섭·박찬대·최종윤·설훈·인재근·오기형·김경협·김상희·김승남·윤건영·기동민·김병기·최기상·김영주·김성환·허영·장경태·고용진·안규백·김민석·박홍근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조오섭·박주민·허영·박상혁·장철민·김원이·어기구·이동주·우원식·송갑석·안민석·민형배·이용빈·이형석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5. 이종성·김미애·하영제·박대수·최춘식·강기윤·박정하·우신구·백종현·조정훈·김상훈·이태규·배준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6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권영세·김용판·서일준·주호영·강대식·이인선·이용·조경태·정진석·김정재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권영세·김용판·서일준·강대식·주호영·이인선·이용·조경태·정진석·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회부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7. 서범수·이종성·한무경·윤영석·김용판·지성호·조정훈·김희곤·이양수·임이자·권명호·구자근·하태경·정점식·이달곤 의원 발의)

11월 20일 회부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0. 용혜인·이소영·강민정·맹성규·김홍걸·류호정·민병덕·김성환·강은미·심상정 의원 발의)

11월 21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1. 민홍철·최인호·이상현·김두관·김희재·박재호·전재수·김정호·한준호·장철민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1. 양이원영·위성곤·황운하·이수진(비)·김승원·강민정·이용빈·이용선·윤준병·신정훈·김정호·이원택·양정숙 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1. 김정재·권영세·김학용·서일준·유경준·박정하·강대식·정동만·엄태영·김희국·서범수 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1. 심상정·장혜영·이은주·강은미·류호정·강성희·양정숙·배진교·용혜인·강민정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2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3. 김영선·엄태영·임이자·주호영·이종배·최영희·이종성·김미애·최형두·최연숙·강기윤 의원 발의)

11월 24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김성환·고용진·김병기·최인호·노웅래·허종식·이소영·김민석·박상혁·허숙정·우원식·허영 의원 발의)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정동만·백종현·조경태·서범수·안병길·이현승·전봉민·김도읍·이주환·황보승희 의원 발의)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민홍철·전재수·김정호·이상현·김민철·김민기·박재호·최인호·조오섭·김두관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4. 서범수·이종성·윤영석·김용판·지성호·조정훈·김희곤·이양수·임이자·권명호·구자근·하태경·이달곤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7일 회부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유경준·정우택·이채익·김성원·이용호·태영호·배준영·양금희·노용호·서범수 의원 발의)

11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6. 구자근·이주환·이명수·김예지·이인선·박성민·정운천·최준식·박대수·김희곤 의원 발의)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0. 양이원영·이동주·이용빈·정일영·김상희·신정훈·이용선·윤준병·이수진(비)·김정호·이원택·양정숙 의원 발의)

1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3846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1. 7.
	제338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848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85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1.15.
	제3387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1.16.
부령	제126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1.
	제1271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8.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10.
	제1273호	자차입법권 강화 및 자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2023. 11. 17.
	제127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20.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공포일자
부령	제127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 11. 20.
입법예고	제2023-133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	2023. 11. 3.
	제2023-13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	2023. 11. 7.
	제2023-134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11. 8.
	제2023-13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23-136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23-13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1. 10.
	제2023-139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11. 13.
	제2023-14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 11. 15.
	제2023-14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11. 16.
	제2023-1420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